

#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성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3. 9. 17.

발 의 자 : 김성찬 · 심윤조 · 이노근

김진태 · 김태호 · 강기윤

송영근 · 김영주(새) · 정희수

서상기 의원 (10인)

찬 성 자 : 0 인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지자체별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학교 외 학습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·고교생들이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.

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 3,951개 작은도서관의 대다수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, 작은도서관이 학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작은도서관에 중·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

도록 하고, 몇 개의 작은도서관별로 관리교사를 두거나 학습센터에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·제4항 신설 및 제8조제1항).

##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위원회의 구성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”을 “위원회와 학습센터의 구성·설치·운영, 관리교사와 보조교사의 채용 등에 필요한”으로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에 중·고등학생을 위한 학습센터(이하 “학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도서관서비스 제공, 학습관리와 진로지도 등을 위하여 학습센터가 설치된 수개의 작은도서관별로 퇴직 교원 등을 관리교사로 채용하거나 학습센터에 대학생 등을 보조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.

제8조제1항 중 “따라 작은도서관”을 “따라 작은도서관(학습센터가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<p>위하여 직권 또는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에 <u>따라</u> <u>작은도서관</u> 육성 시범지구(이하 “시범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<u>따라</u> <u>작은도서관(학습센터가 설치된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